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20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황정아·박용갑·허 영

김성회 · 임광현 · 김문수

주철현 · 장철민 · 이용선

허성무 • 백승아 • 고민정

김 윤 • 최민희 • 박지원

서미화 · 위성곤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1997 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년이 하향 조정되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없이 정년 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간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연구현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교원 등에 비해 현저히 짧은 한편,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국가 R&D 시스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또한, 총액 인건비, 정원 확대, 기술개발 인센티브 등 현장 연

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협의체를 마련하여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12조의 4 신설).

법률 제 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4(연구원의 정년 및 처우개선 등) ①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②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원(정년에 도달한 연구원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년 이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회의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 및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연구원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 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의 설치

·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의 정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62세,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64세, 2030년부터는 65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12조의4(연구원의 정년 및 처
	우개선 등) ① 연구기관에 속
	한 연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연구원의 정년은 65세로
	<u>한다.</u>
	②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원(정
	년에 도달한 연구원을 계속하
	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년
	이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
	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개
	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
	<u>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회</u>
	의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 및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처우개선협의체를 둘
	<u>수 있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연구원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 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협의체 의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 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